용성출력용0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18아12792 집행정지
신 청 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공동대표이사 박성덕, 정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기, 박찬근, 이유진, 박은정
피 신 청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수행자 한지현, 허은영, 윤상화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8. 9.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8. 9.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및 별지 제2항 기재 방송송출기간 제한 및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873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4.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강동훈

판사 김주성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거부한다.

2. 재허가 거부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라

   가. 2019. 9. 4.까지 방송 연장(다만,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사업자가 방송을 개시하는 경우 방송을 중단하여야 함)

   나. 가입자에 대한 고지

   가입자들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제출

   다. 방송연장명령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제출. 끝.

정본입니다.

2018. 10. 4.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한복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